

**2026년도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육성자금 용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**

「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용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7.

화 천 군 수

1. 지원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,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.

- ▶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
- ▶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
- ▶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의하여 등록 허가를 득한 건설업체
- ▶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
- ▶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
- ▶ 「식품위생법」 제22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체
- ▶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·미용업체
- ▶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
- ▶ 「유선및도선사업법」 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
- ▶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·소매업체

2. 취급 금융기관(8개소)

- ▶ 농협은행화천군지부, 강원다누리신협, 화천새마을금고, 다창새마을금고, 화천농업협동조합, 간동농업협동조합, 춘천철원축협화천지점, 화천군 산림조합

3. 용자추천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

- ▶ 용 도 :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- ▶ 용자추천 지원한도(최근 2년 내 매출액에 대한 상한액으로 결정)
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도선업 : 2억원 이내
 - 숙박업, 일반음식점업, 이미용업, 자동차정비업, 도·소매업 : 5천만원 이내
- ▶ 지원방법 :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(융자금 금리 중 4.5% 보조)
- ▶ 지원기간 : 2년간(1회에 한하여 1년 연장, 최대 3년)

4. 지원제외대상

- ▶ 동일한 목적으로 타 용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업체(중복제한)
- ▶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
- ▶ 휴·폐업 신고업체
- ▶ 사치·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
- ▶ 국제·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

5. 용자신청기간 : 2026. 1월 ~ 용자추천한도 소진시까지

6. 대출기한 : 용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(기한경과 시 용자 불가)

7. 신청 및 구비서류

- ▶ 신청서 접수 :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
- ▶ 구비서류
 - 용자추천 신청서 1부(접수처 비치)
 - 사업계획서 1부(접수처 비치)
 -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
 -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(재무제표 포함),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)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증명(최근 2년)
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

-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등·초본 1부
- 유망중소기업 선정서, 수출실적증명서, 품질관리인증서, 표창장 사본(해당업체)
-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

8. 추천업체 선정방법

- ▶ 신청업체 적격여부 검토 후 용자 대상업체 선정, 금융기관 추천 및 업체 통보

9. 기타 문의사항 :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(☎033-440-2109)

사 업 계 획 서

1. 융자금 사용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 (※ 융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지출하는 기간)

2.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(관련 증빙 자료 첨부)

[단위 : 백만원]

세부사업명	산출내역 (품명×수량×가격)	총소요자금			비고
		융자금	자기자금	계	
계					

3. 소요자금 조달방법

[단위:백만원]

계	융자	자기자본	기타	비고

4. 융자금 상환계획(해당란에 ○표 바랍니다)

- 일시상환 () - 적금상환 () - 분할상환 () - 기타 ()

5. 기타 :

※ 첨부 :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산출 증빙자료